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을 강화하며,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안 제2조제3항)

정보제공 범위를‘인사상 목적’외에‘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그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위해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함

다.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 포함(안 제6조제1항)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정보제공 기관에 포함함

라. 직접열람 방법 및 열람 범위의 설정(안 제6조제6항)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마.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 명확화 및 대상기관 확대(안 제7조)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국가
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까지 확대함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안 9조제3항)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및 직접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집·관리하기”를 “발굴·수집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집·관리”를 “발굴·수집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집·관리하는”을 “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인사상의 목적으로”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아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관리하는”을 “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으로, “직위 등의 적합성을”을 “직위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로 한다.

제3조의2 중 “수집·관리하기”를 “발굴·수집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발굴 및”을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발굴·수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으로, “수집·관리”를 “발굴·수집하여 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을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함한다)의 주요”를 “포함한다)의”로,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을 “등 인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을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으로,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를 “지방공무원의”로,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을 “자격증 등 인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경력, 자격증 등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으로, “공문서로”를 “공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한 경우에는”을 “협의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인사혁신처장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을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으로, “공직후보자의”를 “공직후보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때에는 「전자정부

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민간에게 개방된 직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험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천이 필요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를“(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우편·팩스·이메일”로 한다.

- ①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중 “수집·관리”를 “발굴·수집 및 관리”로 한다.

제10조의3 중 “수집”을 “발굴·수집”으로 한다.

제11조 중 “입력, 검색, 출력”을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로, “등록”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요청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6조제6항의 직접열람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u>수집·관리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발굴·수집하여 관리하기</u> ----- -----.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u>수집·관리</u> 할 수 있다.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 ----- ----- ----- ----- ----- <u>발굴·수집하여 관리</u> ----- -----.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u>수집·관리하는</u>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② ----- ----- <u>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u> ----- ----- ----- -----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 -----

-----.

③ -----

-----.

----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
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
-----.

④ 인사혁신처장은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아 <u>공직 후보자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정보를 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u>수집·관리하는</u>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u>직 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u> 1.·2. (생략)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 <u>발굴·수집하여 관리하는</u> ----- <u>직 위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u> -----.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u>수집·관리하기</u>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 <u>발굴·수집하여 관리하기</u> -----.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u>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u>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 <u>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발굴·수집하여</u> -----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u>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u> 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u>수집·관리</u> 할 수 있다.	----- ----- -----. ② ----- <u>공직후보자 등</u> ----- ----- ----- <u>발굴·수집하여 관리</u> ----- -----.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u>포함한 다</u>)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 ----- ----- ----- ----- ----- <u>포함한 다</u>)의 ----- --- <u>등 인사 및</u> ----- ----- ----- ----- -----.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

-----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 (여성은 5급 이상) -----
---- 지방공무원의 -----
----- 자격증 등 인사 및 -----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경력, 자격증 등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 공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 협의하면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문서로 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

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 상태 및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 공

직후보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직후보자들의 -----

-----.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제7조(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민간에게 개방된 직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공직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험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천이 필요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 받은 자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의 열람 등) ①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처장이 정한다.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844